

##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

지정번호	2020-20호	지정연월일	2020년 11월 27일
신청인	회사명(성명) 주식회사 위대한상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	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110111-6242335
	서울시 강남구 선릉로93길 40 나라키움 역삼A빌딩 406호		
	대표자 김유구		
지정 대상 기술·서비스	명칭 및 주요내용 (명칭) 공유주방 서비스 (주요내용) 음식점 창업자를 대상으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어·공유하는 서비스(공유주방)		
유효기간	과기정보통신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		
지정 조건	< 부가 조건 >		
	<2개점 공통> ① 운영자는 '위생관리책임자'를 지정하여 운영하고, 매일 주방시설 및 식재료에 대한 위생 관리 상태 점검 및 기록·관리 - 공유주방 운영·이용자는 모두 「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」 준수 ② 공유주방 이용자는 매일 자체 위생점검 실시 및 기록·관리 ③ 주·야간 영업자는 매 영업 종료 시 마다 주방의 위생상태 등에 관한 인수인계서 작성·보관 ④ 각 영업자별 식재료 보관공간을 구분 제공하고, 개별 식재료에는 모두 이용자(소유자) 식별표시 부착 <다동점> ⑤ 동 시간대 주방 최대 이용자는 2명의 영업자(3명/1영업자)로 제한		

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.

2020년 11월 27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